

"용서, 사랑의 시작입니다(사 55:7, 엡 4:31-32)"

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

수 신 노회장
참 조 노회 서기 및 선교부장
발신부 세계선교부
제 목 선교사 세무 관리 지침 개정 안내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.

최근 정부의 세법 시행령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) 개정 (2026.02.27.)과 함께 과세당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·감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.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노회와 지역교회가 특별히 주의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 있어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첨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노회 소속 지역교회에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선교사 세무 관리 지침 개정 안내. 끝.

총 회 장
부 장

정
김 후



과장 채송희 실장 신윤정 총무 류현웅 사무총장 최상도

시행 해외·다문화선교처 - 1784 (2026.08.19)

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(연지동) ,7F/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

전화 02-763-9764

전송 02-763-7331

/ songhee@pcknet.org

/ www.pck.or.kr
/공개